

---

## 2025년 상주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

---

상주지역 경제 구인난 해소 및 신중년의 경제적·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「신중년 고용지원사업」 참여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. 7. 1.



### I 사업개요

1. 사업명 : 상주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
2. 모집기간 : 예산 소진 시 까지
3. 지원대상 : 채용일 기준, 만40세 이상~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
  - 1) 상주시 소재 기업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

### [지원제외 업종]

- ① 일반유희 주점업, 무도유희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
- ② 변호사/회계사/병원/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/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대상 업종
- ③ 비영리기업/단체/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
\* '사회적기업 육성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, '협동조합 기본법'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'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'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
- ④ 기타 시군에서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

## 5. 참여 대상자

- 1) 사업 참여일 기준 주소지가 상주시인 신중년
- 2) 연령기준 : 채용일 현재,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
- 3) 고용상태 : 미취업자(실업자+비경제활동인구) 및 이에 준하는 자

## 6. 지원내용

- 1) 상주시 중소기업이 상주시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중년 신규 채용 시 **1인당 최대 월 70만원의 인건비 지원(최대 10개월간, 사업장별 최대 3인까지)**
- 2)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조건. **임금의 하한 기준**

## 7. 기타

- 1) 정규직 채용 여건 우선 고려 및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.
- 2) 사업주는 신규 채용 대상자에게 근로개시일 전까지 [서식1~3]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.
- 3) 신중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에 따른 의무 부담분은 경감할 수 없음.
- 4) 임금의 최소 40% 이상 부담 필수.
- 5)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을 가입하여야 함.

#### [4대 보험 가입대상]

- 국민연금 :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)
- 건강보험 :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)
- 고용보험 : 실업급여는 65세 미만\* 근로자
  - \* 단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령 제한 없이 가입
  - \*\* 주 15시간 미만은 계속해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 시만 제외
- 산재보험 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

## II 사업 대상 선발

### 1. 사업대상자의 선발

- 1) 신중년과 중소기업이 상호 매칭 후 신청하면, 제한 조건 등을 확인하여 **선착순으로 선발**
- 2)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\*는 배제
  - ① \*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,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
  - ②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·반복 참여 여부 확인
- 3) 채용 시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
- 4)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 시 즉시 참여시킬 수 있으며, 예비대상자에게는 대기 순번을 부여.
- 5) 참여 사업주 및 참여자는 허위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,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.

## 2. 사업장 선정

- 1) 기업문화의 질, 직원 복리후생 등 여건에 맞는 평가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정
- 2)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,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교육\*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함.

\* 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내용(보조금환수, 고발, 제재부가금, 보조사업수행배제, 명단 공표 등) 등

### 3)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

- ①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- ② 국가 및 자치단체

#### ❖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

- ①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
- ②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감,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
- ③ 「국회법」에 따른 국회, 「법원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법원, 「헌법재판소법」에 따른 헌법재판소,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감사원

- ③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
- ④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- ⑤ 참여자와 사업주가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
-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
※ 단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- ⑦ 당해 사업장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현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근무했었던 자를 채용하는 경우
- ⑧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

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

### 3. 지도·점검 및 관리

#### 1) 사업장 부정수급 예방 등 현장 지도·점검

① 적정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\* 분기 1회 실시

\* (예) 근로기준법 위반, 불합리한 처우 등 애로사항 여부 확인, 참여자 면담 및 의견 수렴 등

② 도에서 필요시 사업장에 대해 시·군 합동점검 실시할 수 있음

③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 수급의 신고 또는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 실시

#### 2) 사업 및 사업장 관리

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·관리

② 사업장 관리방안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

### 4. 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

1)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장이 법령 및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, 경고, 참여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

2) 『근로기준법』, 『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』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법률상 조치사항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수행배제, 보조금의 환수 등\* 조치

\*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, 제34조(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) 등

\* 부정수급 조치사항에 대한 도 통보(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)

<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내 반환규정 >

제12조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 2. 법령, 조례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 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 4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.

제34조(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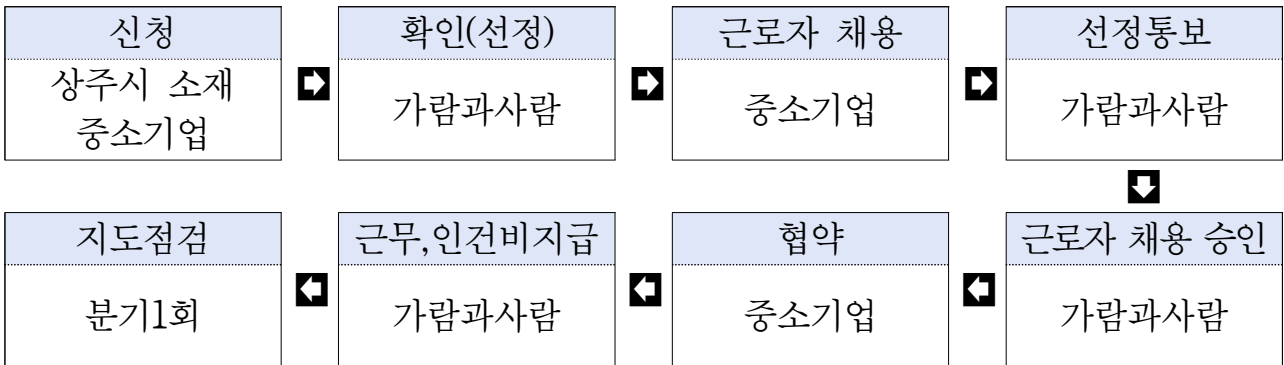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  2.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 3.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
-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.

### III 추진일정

#### 1. 추진일정

| 구분               | 일정       | 내용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참여 중소기업<br>신청 접수 | 예산 소진시까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온라인 접수 및 전화 문의</li> <li>• 상주시청, 가람과사람 홈페이지</li> <li>• egaram.kr→공지사항→모집공고</li> </ul> |
| 서류 확인(선정)        | 예산 소진시까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구비서류 확인 후 개별통보<br/>(최대 10개월, 3명)</li> </ul>  |
| 협약체결             | 수시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협약체결(가람과사람)</li> </ul>   |

## 2. 추진체계



## IV

### 서류제출

1. 접수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
2. 접수방법 : 가람과사람 홈페이지

(www.egaram.kr→공지사항→공모접수)

1) 과 일 명 : 신중년 고용지원사업\_회사명(대표자명)

2) 제출서류 :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신청서[서식 4], 첨부서류

3) 문 의 : 1533-1347 (가람과사람.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담당자)

3. 구비서류

| 구분       | 내용  |
|----------|---|
| 제출<br>서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신청서 [서식4]</li> <li>※ 아래 1~7은 하나의 pdf파일로 합쳐서 첨부</li> <li>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</li> <li>2. 중소기업 해당 확인서 1부</li> <li>3.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</li> <li>4.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</li> <li>5.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</li> <li>6.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</li> <li>7.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(국세청홈택스 발급) 각 1부</li> <li>8. 선정 이후, 가람과사람(상주시)에서 요청하는 추가 증빙서류 각 1부</li> </ul> |

## V

## 기타 유의사항

### 1. 유의사항

- 1)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과 아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름
- 2)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, 지방재정법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
- 3) 2025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은 상주시와 가람과사람에 있음.